

2006 축산물위생감시지침

2006. 1.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축산물 안전관리”

목 차

I. 축산물위생 정책방향

| | |
|--------------------------------------|---|
| 1. 축산물 안전성 확보 | 1 |
| 2. 축산물의 단계별 위생관리 | 2 |
| 가. 가축 사육(생산)단계에서의 위생관리 | 2 |
| 나. 도축단계 위생관리 | 3 |
| 다. 축산물 가공·포장처리·보관·운반·판매단계 위생관리 | 4 |

II. 축산물 위생감시 요령

| | |
|---------------------------------------|----|
| 1.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위생감시 | 5 |
| 가. 기본방향 | 5 |
| 나. 지도·점검 방법 | 5 |
| 다. 점검반 편성 | 6 |
| 라. 점검횟수 | 6 |
| 마. 위생점검 요령 | 6 |
| 2. 유통·판매 중인 축산물의 위생감시 | 10 |
| 가. 기본방향 | 10 |
| 나. 관리대상 업종 | 10 |
| 다. 주요 점검내용 | 11 |
| 라. 지도점검 및 조치요령 | 13 |
| 마. 압류·폐기 요령 및 절차 | 13 |
| 3. 수입축산물 사후관리 | 14 |
| 4. 축산물의 수거검사 | 15 |
| 가. 기본방향 | 15 |
| 나. 수거검사 대상품목 | 15 |
| 다. 수거·검사기관 | 16 |

| | |
|-----------------------------------|-----------|
| 라. 수거방법 | 16 |
| 마. 시·도별 수거물량 | 17 |
| 바. 검사항목 | 18 |
| 사. 행정사항 | 18 |
| 5.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활동 | 19 |
| 가. 기본방향 | 19 |
| 나. 하절기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 19 |
| 다. 성수기 축산물 특별단속 | 20 |
| 라.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 특별단속 | 22 |
| 마. 행정사항 | 23 |
| 6. 허위표시·과대광고 단속 | 24 |
| 7. 기동단속반 및 고발센터 운영 | 25 |
| 가. 목적 | 25 |
| 나. 운영내용 | 25 |
| 다. 행정사항 | 27 |
| 8. 교육 및 홍보 | 27 |
| 가. 기본방향 | 27 |
| 나. 교육 | 27 |
| 다. 홍보 | 28 |
| 9. 위생점검 실명제 추진 | 29 |
| 가. 목적 | 29 |
| 나. 대상 | 29 |
| 다. 관련법령 내용 | 29 |
| 라. 행정사항 | 30 |
| 10.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준수사항 | 31 |

< 별지서식 및 붙임자료 >

< 별지서식 >

| | |
|-------------------------------|----|
| [별지 1] 축산물 수거검사 현황 | 32 |
| [별지 2]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 35 |
| [별지 3] 부적합제품 등 조치현황 | 36 |
| [별지 4] 축산물위생감시실적 보고 | 37 |
| [별지 5]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정처분실적 | 42 |
| [별지 6] 고발·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43 |
| [별지 7]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일지 | 44 |
| [별지 8] 문제업소 관리대장 | 45 |
| [별지 9] 특별지역 관리대장 | 46 |

< 붙임자료 >

| | |
|---|----|
| [붙임 1] 축산물가공품 중점검사 항목 | 47 |
| [붙임 2]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50 |
| [붙임 3] 먹는물의 수질기준 | 53 |
| [붙임 4]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 56 |
| [붙임 5]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 57 |
| [붙임 6]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감시의 착안사항 | 58 |
| [붙임 7] 표시기준에 대한 감시의 착안사항 | 62 |
| [붙임 8] 확인서 | 67 |

I. 축산물위생 정책방향

<추진목표>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가 연계된 일관된 위생관리체계 확립
- 안전성이 보증된 축산물 생산을 위한 SSOP 정착, HACCP의 점진적 확대 적용

1.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식수준 제고
 -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 위생적인 사료관리로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방지
 - 가축의 도축 출하 전 비육후기 배합사료 급여 및 휴약기간 준수
 - 가축의 도축장 출하 시 체표면의 분변 등 오염물질 제거
 - 농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 조기정착 유도 및 홍보
- 축산물작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 도축장, 집유(集乳)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보관장의 자체 위생관리기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이하 “SSOP”라 한다) 이행
 - 축산물 운반업소 및 판매업소의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 이행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적용 확대
 -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시설 및 위생수준 향상
-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는 위해가능성이 높은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
 - 유통(보관·운반)·판매중인 축산물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검사 강화
 - 수입축산물의 검역·검사 강화

-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정착
 - SSOP : 도축·집유·가공·식육포장처리·보관·운반·판매 단계 의무적용
 - HACCP : 도축업은 의무적용, 농장 및 집유·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보관·운반·판매업은 준수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적용
 - 가축의 사육에서 축산물의 판매단계까지 SSOP 및 HACCP 연계 추진

2. 축산물의 단계별 위생관리

가. 가축 사육(생산)단계에서의 위생관리

- 가축 사육환경위생 및 질병예방관리 철저
 - 농장의 HACCP 도입·정착으로 위생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잔류방지 개선방안 제도 철저
 - 가축질병근절대책의 적극 추진 및 수출입검역 철저
- 사료 안전성 확보
 - 사료공장 HACCP 조기 정착 유도
 - 배합사료첨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보조·단미사료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
 - 사료 생산단계별 모니터링 확대 및 오염방지대책 강구
 - 가축의 출하 전 일정기간 비육후기 배합사료 급여 철저
- 착유가축검사 및 원유검사 등 철저
 -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 철저
 - 자체검사원의 원유위생검사(집유전·실험실 검사), 시설위생검사 강화
 -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불신 해소 및 원유위생수준 향상
 - 유방염 감염젖소의 조기치료 등으로 원유의 위생관리 도모

나. 도축단계 위생관리

□ 도축장 시설위생관리 강화

- 미생물오염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등 확충
 - 가축 및 식육 운반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시설 설치·운영
- 미비 또는 노후시설의 개·보수로 시설위생 제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시설기준에 미흡한 도축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 도축장 위생관리 감독 강화

- 도축장내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 준수
- HACCP 미운영 도축장에 대한 관리 강화
 - HACCP 운용에 관한 기술·정보 제공 및 추진 독려
 - HACCP 미운영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철저
- HACCP 적용 도축장의 운용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연 1회 이상 HACCP 운용여부 실태조사 및 미운영 업소 행정처분
 - 운용이 미흡한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 도축검사 강화

- 도축하는 가축의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철저
- 유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에 따른 검사실시
 - 농가에서 가축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하여 일정기간 규제검사 실시 및 해당농가 특별관리(익명 출하방지 감독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미생물검사 강화
 - “식육 중 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고시)”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검역원고시)”에 따라 미생물검사 실시
 - HACCP 적용도축장의 운용여부 검증을 위한 미생물검사 철저
 - 검사결과 부적합 도축장에 대하여는 시정 및 행정처분 조치 철저

다. 축산물 가공·포장처리·보관·운반·판매단계 위생관리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 강화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위생검사 및 SSOP 의무적용
 - 제품에서 공중위생상 문제점 발견 시 단계별로 원인을 역추적(trace-back)하여 위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 축산물 보관·운반 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 보관·운반업소의 SSOP 의무적용 및 HACCP 단계적 확대 유도
 - 축산물보관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 강화
 - 축산물운반차량의 지육현수 및 냉장·냉동운반 준수
 - 식육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판매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판매업소의 SSOP 의무적용 및 HACCP 적용 확대 유도
 - 축산물의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 정착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서 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기록의무 철저 시행
 - 식육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 철저
 - 식육 종류 및 원산지 표시, 포장판매 시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표시 철저
-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소의 위생지도·감독 강화
 - 해당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하절기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감시 강화
 - 분쇄가공육제품(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까스류) 등 수거검사 강화

II. 축산물 위생감시 요령

1.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위생감시

가. 기본방향

- 실적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과학적인 단계별 점검 실시
-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이고 위생관리차원의 점검 실시
- 고의적·반복적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점검 등 중점관리
- 민원 및 정보 등에 의한 대상업체 위생점검 실시
- 유해한 축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감시분위기 조성
- 허가·신고 업무와 사후위생감시 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시·도(시·군·구)별 허가(신고)기관 책임 하에 위생관리를 실시하되,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원도 실시
- 위생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기획 감시 및 필요시 검찰·경찰·보건부서 등과 합동단속 실시
- HACCP 미지정 작업장(업소)의 “HACCP 적용 작업장(업소)” 명칭사용 여부
- 축산물위생감시 협의체 구성 및 협조체계 구축
 - 검역원, 시·도(시·군·구)간 협의체 구축으로 중복 수거·감시 지양
 - 소비자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연계한 위생감시 활동 전개

나. 지도·점검 방법

-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단계별 지도·점검 실시
- 문제업소 및 집단급식업소에 납품업체 등 잠재적 위해우려업소는 필요시 특별단속
- 업종별 관련 제품의 수거검사
 -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이 높은 품목,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목 등
 - ※ 생산품목이 많은 업소에 대하여는 점검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관련제품 중 제조공정상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 점검 시 경미한 사항(즉석 시정가능 및 시정명령 처분대상 등)에 대하여는 영업자·자체검사원·검사관계자 등에게 현지 지도
-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 병행

다. 점검반 편성

- 검역원(지원 포함) 및 시·도는 자체실정과 인력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감시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타 기관소속 인력을 협조 받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는 관할 시·군·구 등에 협조
 - 필요시 검역원(지원)과 시·도(시·군·구) 합동점검 또는 상호 협조·공조체계 유지
- 점검반은 관련 공무원 2인 1조로 편성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킬 것

라. 점검횟수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수시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HACCP 적용 작업장(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일부터 1년간 출입·검사를 자제하고 사후관리 시 위생검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
 - HACCP 적용업소의 HACCP 적용품목으로 지정된 축산물은 신고·제보·위해정보 입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품목의 수거를 자제(다만,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또는 명령을 한 기관에서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1회 이상 위생검사 재실시

마. 위생점검 요령

(1) 도축업·집유업

- 시설기준 점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1. 도축업, 2. 집유업 참조
-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 점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에 따라 실시

- 도살·처리 시 SSOP 작성·운용여부 점검
 - 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참조
- 도축금지 가축의 도축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중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다 목 참조
- 도축검사신청서 등 서류작성 허위 여부
 - 도축의뢰자, 가축의 출하농가 등 확인
 - 수입생우 도축 시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월 경과 여부
- 점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자체검사원의 업무일지 및 검사보조원 감독사항 등 확인
- 납유가 금지된 가축으로부터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3의2」 “착유가축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 중 2 호 참조
- 자체검사원의 지정 및 검사여부
 -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 자체검사원 업무일지 등 확인
-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것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는지의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 참조
-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의 시설구조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
 - 영업장 소재지 무단변경, 영업의 중요시설 무단변경, 대표자 임의변경, 업소명 임의변경, 무단휴업 등 여부(건물주·영업자 또는 관리인이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직원 확인)
- 가축의 도살·처리 기준 및 점유의 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점유의 기준” 참조

-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를 자체검사원 또는 검사보조원으로 지정하거나 임용하였는지의 여부
 - 건물주·영업자 또는 관리인이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직원 확인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위생교육 실시 여부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참조(붙임 2)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참조
- 그 밖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위반 여부

(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 시설기준 점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3. 축산물가공업, 4의2. 식육포장처리업 참조
- HACCP 적용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및 “축산물가공장 HACCP 적용 매뉴얼” 중 정부위생당국 HACCP 감독지침 참조
-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작업 시 SSOP 운용여부 점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참조
- 비식용 원료사용 여부
 - 공업용·사료용을 식용으로 사용 여부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식품첨가물 또는 이를 함유한 원료사용 여부
 - 통념상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의 사용이나 보관 여부

- 원료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
 - 원료의 자가 검사 또는 공인기관 검사결과의 기록유지 상태
 - 원료에 대한 관능검사 등 위생관리의 적정성
 - 흙·모래 등 이물 혼입방지 여부
 - 원료의 보관 관리실태
 - 원료의 적정온도 보관 및 냉장·냉동시설 정상가동 여부
 - 변질이 쉬운 원료의 분리보관 여부
 -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 적정여부
 - 기타 원료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수입원료의 적정 여부
 - 수입된 원료의 신고여부 확인
 - 공급업체의 영업신고 여부 확인
 - 수입제품의 표시사항 적법성 확인
 - 자사제품 원료용으로 수입한 제품을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였는지 여부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준수여부
 - 자가 검사일지 및 공인검사기관 등의 검사성적서 확인
 - 부패·변질 원료 등에 대한 자체검사여부 및 처리기록 확인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가공품·포장육 검사여부
 - 생산 품목별로 자가 검사 실시여부 확인
 - 위탁검사 시 위탁계약서, 검사성적서 및 검사항목 적정여부 확인
 - 검사불합격품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기록 확인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위생교육 실시 여부
 -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 여부
 - 영업자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의 위생교육 수료여부 확인
 -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여부 확인
-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참조(붙임 2)

- 표시 및 광고의 적정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에 의한 적합한 표시 여부
 - ※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참조(붙임 4)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참조

2. 유통(보관·운반)·판매 중인 축산물의 위생감시

가. 기본방향

- 유통·판매 중인 축산물(수입축산물 포함)에 대한 수시 기획점검으로 부정·불량축산물 사전 차단
 -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및 계절별 성수축산물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 시중유통 점유율이 높은 축산물, 어린이 기호 축산물 및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위해축산물 처리·가공·판매에 대하여 추적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 유통·판매과정 중 부패·변질될 우려가 많은 축산물의 집중적 관리
-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품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소에 SSOP 의무적용 및 HACCP 자율적용의 단계적 확대 유도
- 소비자동향 및 익명의 고발사항 등 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점검에 적극 반영
- 수입축산물의 사후관리 강화

나. 관리대상 업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식육부산물전문·우유류·축산물수입 판매업)

다. 주요 점검내용

(1) 공통사항

- 허가·신고대상 업종의 허가 및 신고 이행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중점점검
 - 무허가업소 생산제품 및 미표시 제품의 보관·운반·판매 행위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
 - 수입축산물 등의 표시사항이 신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 유통관리에 대한 중점점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부패·변질 축산물 진열·판매 행위
 -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운반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 보관·진열·운반·판매 여부
 - 식육의 경우 영업장안에 검사증명서(수입식육은 신고필증) 보관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점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의 규정을 참고하여 점검 실시
 -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허가(신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 HACCP 미지정 작업장(업소)의 “HACCP 적용 작업장(업소)” 명칭사용 여부
- 유통·판매단계의 SSOP 작성·운용 실태 중점 점검
- 불법 수입축산물 취급판매 행위
 -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축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 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원료용, 연구·조사목적 등 수입 축산물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2)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 축산물보관업
 - 냉장·냉동실의 적정온도 유지여부
 -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 보관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여부
 - 축산물과 다른 제품을 구획·구분하여 보관여부
 - 시설 외부에서 내부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 설치여부
 - 식육의 경우 검사증명서(수입식육은 신고필증) 보관여부
- 축산물운반업
 - 식육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 운반 여부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보유여부
 - 운반하는 축산물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유지 여부
 - 적재고의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 설치 여부
 - 축산물 외의 비위생적인 물품 등 운반 여부
 -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현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 식육 및 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
 - 식육의 종류·물량·원산지 및 매입처 등 거래내역서 작성·비치 여부
 - 식육을 용기에 담아 진열·판매 시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표시 철저
 - 수입생우 유래의 축산물 판매 시 수입소가 표기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수출국가 및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6월 경과여부 표시)
 - 진열상자 및 냉장·냉동시설 내 식육의 위생적 보관 여부
 - 식육 등을 적정온도로 냉장·냉동 보관하는지의 여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의 적정성 여부
 - 냉장·냉동실안의 지육현수시설 운영 여부
 -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특히, 포장육) 가공·판매 여부
- 우유류판매업
 - 우유류를 냉장 보존할 수 있는 전용의 전기냉장시설 설치 여부
 - 냉장보관(10℃이하) 적정 여부

- 제조일자 허위 또는 미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류의 보관·판매 여부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합 여부(한글표시사항 및 원산지표시 등)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신고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라. 지도점검 및 조치요령

- 상기 주요 점검사항을 착안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 무허가·미표시 제품,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행위자를 적발,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위반제품이 타 시·도 허가(신고)품목인 경우 즉시 해당 시·도 통보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사항은 지체 없이 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 사전 차단
-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 병행

마. 압류·폐기 요령 및 절차

-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소
 - 시설은 폐쇄조치, 장비·도구 등은 압류조치
 - 가공업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 고발
- 부정·불량축산물
 -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 교부 및 확인서 징구
 - 당해제품을 일정 장소에 모아 사진 촬영
 - 당해제품 폐기(소각·매몰), 폐기 증거자료 확보, 폐기 보고 등

3. 수입축산물 사후관리

가. 기본방향

- 수입신고 후 국내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당초 수입한 목적에 부합되는 유통·판매·사용을 유도하고 재 오염 방지차원의 사후관리 실시

나. 관리대상

-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 등

다. 관리방법

- 수입축산물의 위생관리 철저
 - 판매용·자사제품 원료용·외화획득용 등으로 수입한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 목적에 부합되게 유통·판매·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 목적 외 용도사용을 승인받은 수입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관리 실시
- 유통 중인 수입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수입신고 후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축산물 중 재 오염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수거검사 실시
 - 위해가 우려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유형)을 집중 수거
 - 검역원에서 '06년 수거물량 중 50건을 실시하고, 부적합비율을 감안하여 검사확대 추진
-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여부 등 점검

라. 행정사항

- 검역원(지원 포함) 및 각 시·도(시·군·구)는 필요시 자체계획에 반영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감시 실시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
 - 검역원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검사결과(수입판매업소명, 제품명, 수출국, 작업장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부적합내용 등)를 즉시 농림부에 보고
- 수입축산물의 유통관련 정보수집 등 위생감시 활동 강화

4. 축산물의 수거검사

가. 기본방향

- 목표달성 위주의 획일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정보에 의한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과 연계,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별 및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수거 실시
- 축산물가공업소 등 점검 시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 위주로 수거검사 실시
- 시중유통 점유율이 높은 축산물, 어린이 기호 축산물 및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에 대한 집중적 수거검사
- 신규품목 및 변경된 품목과 언론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한 축산물에 대하여 수거검사 실시
-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의 축산물에 대한 기획수거 실시
- 국내 유통 중인 수입축산물 기획수거 실시
- 제품수거는 축산물가공업소(직영판매장 및 대리점 등)·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보관업소·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기한이 연장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우선 수거
- HACCP 적용 작업장의 HACCP 적용품목에 대하여는 지정일부터 1년간 수거검사 차제

나. 수거검사 대상품목

- 축산물 :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 문제 축산물
 - 하절기·성수기 등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시 수거한 축산물
 - 가공치즈·햄·소시지 등 공중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
 -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의 축산물
 - 기타 공중위생상 문제발생 우려 축산물 등

다. 수거·검사기관

- 수거기관 : 검역원, 시·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포함), 시·군·구
- 검사기관 : 검역원(본원, 서울·부산지원),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라. 수거방법

- 수거기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에 따라 제품수거
 - 검역원(지원) 및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절별 성수품 등을 고려한 월별 수거계획을 상호 협의 수립하여 기관별 중복수거 방지
 - 제품수거 시 특정업소와 특정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대상업소 및 대상품목을 최대한 적절히 배분
- ※ 검역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검사시료는 해당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생물검사 등 신속을 요하는 검사시료의 경우에는 수거장소와 가까운 검사기관을 이용
- 재래시장·영세업소 등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 검역원 및 시·도는 수거물량 중 일정비율을 위생취약지역에서 수거
- 국내 유통 중인 수입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검역원 자체 수거물량 중 50건 수거, 부적합비율을 감안 검사확대 추진
- 수거검사 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공정성 확보
- 제품수거 및 표시기준의 적정여부 확인
 - 축산물가공업소(직영판매장 및 대리점 등)·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 보관업소·축산물판매업소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보건부서와 공조체제 유지
 - 축산물가공업소(직영판매장 및 대리점 등)·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 보관업소·축산물판매업소의 제품수거 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확인

마. 시·도별 수거물량

(단위 : 건수)

| 구 분 기관명 | 계 | 식육 | 식용란 | 포장육 | 식 육 가공품 | 유(乳) 가공품 | 알(卵) 가공품 | 문 체 축산물 |
|------------|-------|-----|-----|-----|------------|-------------|-------------|------------|
| 계 | 6,720 | 300 | 200 | 795 | 2,525 | 1,915 | 395 | 59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500 | - | - | 50 | 200 | 110 | 40 | 100 |
| 서울 | 1,080 | 20 | 15 | 130 | 510 | 300 | 35 | 70 |
| 부산 | 460 | 20 | 15 | 55 | 180 | 120 | 35 | 35 |
| 대구 | 380 | 20 | 10 | 40 | 140 | 120 | 15 | 35 |
| 인천 | 380 | 20 | 10 | 40 | 140 | 120 | 15 | 35 |
| 광주 | 220 | 20 | 10 | 25 | 80 | 65 | 5 | 15 |
| 대전 | 245 | 20 | 10 | 30 | 80 | 70 | 5 | 30 |
| 울산 | 150 | 10 | 5 | 20 | 50 | 50 | 5 | 10 |
| 경기 | 985 | 20 | 15 | 120 | 350 | 350 | 80 | 50 |
| 강원 | 260 | 20 | 15 | 30 | 80 | 70 | 15 | 30 |
| 충북 | 215 | 20 | 15 | 25 | 65 | 55 | 10 | 25 |
| 충남 | 335 | 20 | 15 | 45 | 110 | 85 | 35 | 25 |
| 전북 | 260 | 20 | 15 | 30 | 80 | 75 | 15 | 25 |
| 전남 | 260 | 20 | 15 | 30 | 85 | 70 | 15 | 25 |
| 경북 | 450 | 20 | 15 | 55 | 165 | 120 | 40 | 35 |
| 경남 | 415 | 20 | 15 | 55 | 165 | 110 | 25 | 25 |
| 제주 | 125 | 10 | 5 | 15 | 45 | 25 | 5 | 20 |

- ※ 검역원의 축산물에 대한 탐색조사는 별도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진
- ※ 기관별 수거목표량은 최소 수거량으로, 각 기관은 목표량 이상을 수거
- ※ 가공품별 수거목표량은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바. 검사항목

- 식육·식용란
 - 식육은 휘발성염기질소(부패여부 확인) 및 수분검사(지육 등에 수분 강제주입 여부) 등 중점검사 실시
 - 식용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 중 제3호 식용란의 검사 참조
- 포장육·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 의함(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축산물 공통기준 및 규격을 함께 적용)
 - 검사관은 붙임 1의 “축산물가공품 중점검사 항목” 및 검사기관의 검사 능력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정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기관은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검사를 수행

사. 행정사항

- 농림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성, 계절적 영향 및 제품의 특성(중점 수거품목) 등을 감안하여 검사대상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거검사 실시
- 가능한 무상수거를 지양하고 유상수거 실시
 - 시·도는 유상수거를 위한 비용을 적극 확보할 것
- 검역원장은 수거검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원장에게 통보하고, 각 지원장은 매월 자체 세부수거검사계획을 관할 시·도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 수거방지를 위한 협조체제 유지
- 수거검사 결과보고(통보)
 - 시·도지사는 수거검사 결과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1] 서식에 따라 검역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원장은 매분기 수거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검사실적은 검사가 종료된 것으로 하며 진행 중인 것은 다음 분기에 보고

※ 보고(통보)체계 : 시·군·구 → 시·도 → 검역원 → 농림부
검역원 지원 → 검역원 본원 → 농림부

- 보고서식

- 축산물수거검사현황 : [별지 1]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 [별지 2]
- 부적합제품 등 조치현황 : [별지 3]

5.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활동

가. 기본방향

- 농림부·검역원(지원 포함) 및 시·도(시·군·구) 소속 검사관을 동원하여 집중 합동단속활동 전개
-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한 국민 모두의 감시 분위기 조성
- 국민건강 위해우려 축산물, 문제업소 및 취약지역을 선정 중점단속
- 우유·아이스크림 등 계절적 성수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나. 하절기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1) 목적

- 여름철 변질·부패되기 쉽고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2) 기관별 추진사항

- 농림부(검역원)
 - 하절기 축산물위생관리 총괄
 - 문제발생 우려 축산물 또는 관련업소 사전점검 및 정보수집 강화

○ 시·도(시·군·구)

- 하절기 축산물위생관리 자체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내 문제발생 우려 축산물 또는 관련업소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3) 중점점검대상

- 하절기 다량 유통 소비되는 축산물
- 부패·변질되기 쉬운 축산물
-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축산물

(4) 세부추진내용

- 하절기에 부패·변질 등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가공·포장 처리·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검사·수거 등 집중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원료의 적합성 및 성분배합기준의 적합성 여부
 - 처리·제조·가공공정의 적정성 여부
 -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운반·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의 적정성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의 보관·진열·판매 여부

다. 성수기 축산물 특별단속

(1) 목적

- 연말연시·설날·추석 등 축산물의 다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2) 단속시기

- 설날 대비 축산물 특별단속 : 설날 직전
- 추석 대비 축산물 특별단속 : 추석 직전
- 연말연시 대비 축산물 특별단속 : 연말연시
- 국제행사 등 : 행사기간

(3) 대상업종

- 도축장
- 축산물가공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 갈비가공품(갈비세트), 식육추출가공품(흑염소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 · 포장처리 하는 업소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
- 기타 :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등

(4) 점검방법

- 농림부 · 검역원(지원), 각 시 · 도(시 · 군 · 구)의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또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합동점검 전개
 - ※ 필요시 보건부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 · 단속 실시
- 기관별 위생지도 · 점검대상 업종에 대하여 중점점검(수거검사 포함)

(5) 주요 점검내용

- 도축장
 -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리는 행위
 - 식육운반차량으로 가축을 운반하는 행위
 - 축산물검사관의 복무점검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가축의 도살 · 처리기준 준수,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실시 여부
 -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도축하는 행위 등

-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 원료사용의 적정성 여부
 -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 주요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축산물판매업
 - 무허가·미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 진열, 보관(냉장·냉동)상태 등 위생적 취급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판매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의 취급 여부
 - 거래내역서 또는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여부
 - 젓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 기타 :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지육을 현수하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

라.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 특별단속

(1) 목적

-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영세업소 등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상 위해의 사전 예방 및 축산물의 거래질서 확립

(2) 기본방향

- 소규모 축산물가공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을 중점 지도·점검
- 집중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하여 위생수준 제고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활동 강화
- 필요시 지자체별로 시·군·구청간의 교차점검 및 농림부(검역원)와 시·도 합동점검 추진

(3) 점검대상

- 재래시장에 소재한 축산물판매업소(식육·식육부산물전문·우유류·축산물수입 판매업소) 및 영세업소(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업소

(4) 점검방법

- 단속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필요시 농림부(검역원)는 별도 기획 감시 추진
- 단속방법 : 시·도(시·군·구)에서 관할지역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실시, 필요시 교차점검 및 합동점검 추진
 - 특별단속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시·도(시·군·구)별로 집중관리대상 업소를 파악 유지
- 유통 중인 위해우려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마. 행정사항

- 특별단속의 실시시기와 기간은 농림부장관의 지시 또는 검역원(지원 포함)과 시·도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각 시·도(시·군·구)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타 기관(부서) 소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가공·처리업소 추적 및 행정처분 등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시·도지사는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실적을 포함한 분기별 축산물 위생감시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4] 서식에 따라 검역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원장은 매분기 축산물위생감시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허위표시·과대광고 단속

가. 단속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의 규정에 따라 단속
-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 붙임 4 및 붙임 5 참조

나. 위반내용 이첩 및 행정처분

(1) 위반내용 이첩

- 적발내용은 해당 허가(신고)관청으로 통보
 - 허위표시·과대광고사항을 적발한 기관은 반드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허가(신고)관청으로 이첩할 것
 - ※ 확인서 내용에는 보도(적발)일자, 보도(발행)기관명, 보도면, 허위표시·과대광고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증거품 등을 반드시 첨부
 -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적발한 경우 제품의 포장지를 첨부하여 해당관청에 통보, TV·라디오 등 방송광고의 위반내용은 반드시 녹화 또는 녹취하여 이첩할 것

(2) 행정처분 절차

- 허위표시·과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적발하거나, 이첩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확인서 없이 그 내용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
- 행정처분과 동시에 그 처분내용을 적발기관에 통보

다. 행정사항

- 허위표시·과대광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분
- 2차 위반부터는 고발조치와 병행
- 반복적·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언론에 공개
- 시·도지사는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정처분 실적을 분기별로 [별지 5] 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원장은 매분기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기동단속반 및 고발센터 운영

가. 목적

- 유통기간설정의 자율화 등 축산물위생 행정의 자율성 확대를 틈탄 부정·불량축산물 및 위해축산물의 처리·가공·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
- 관할지역 책임제에 의한 부정·불량축산물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검역원(지원 포함)과 시·도(시·군·구)에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및 고발센터 설치·운영

나. 운영내용

< 기동단속반 >

(1) 주요 업무

- 관할지역내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단속
- 위생취약지역 및 위해우려 축산물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속적 점검
-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조사 및 단속
- 언론 등에 보도된 관내의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활동
- 타 기관에서 이송된 정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 기타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2) 설치 및 운영

- 기동단속반은 검역원(지원 포함) 및 시·도(시·군·구)에 설치·운영 하되, 필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검역원과 시·도(시·군·구)의 인력을 차출하여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자체 실정에 따라 설치·운영
- 명칭은 “○○○ 위해축산물기동단속반”으로 함(이하 “기동단속반”이라 한다)

- 소비자단체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연계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감시정보 수집체계를 구축
- 수집된 정보사항 및 단속계획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
- 기동단속반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 등 근무시간 외에 활동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단속과정에서 관할지역 외의 단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협조를 받아 단속실시

(3) 단속결과 조치 및 홍보

- 고의적·반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행
- 단속결과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 동업자협회 및 축산물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영업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검역원 또는 시·도의 순회교육 실시, 각종 홍보물 배포 등 사전 예방활동 병행

<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 운영 >

- 운영기관 : 농림부, 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
- 운영요령
 - 검역원에 부정·불량축산물 신고전화(34회선) 운용 : 1588-9060
 - 각 시·도(시·군·구)에 전용회선 설치 : 1588-4060(방역위생신고 전용)
 - 주·야간 운영
(주간 : 담당과, 야간 : 당직실에 접수대장 비치, 접수 다음날 담당과에 통보)
 - 고발·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비치[별지 6]
 - 고발내용은 즉시 조사·처리 후 고발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익명의 고발내용에 대하여는 정보사항으로 처리하여 추후 단속에 참고
 -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고발사항 조사·처리에 적극 협조

다. 행정사항

- 기동단속반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일지를 비치하여 활동사항을 기록[별지 7]
- 반복적·고의적 위반업소와 위생관리실태가 부실한 업소를 파악하여 문제업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별지 8]
-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이 우려되는 지역(재래시장·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별지 9]
- 단속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사항 중 다른 시·도의 소관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신고(고발)자의 비밀보장 및 신고(고발)사항 조사·처리 철저

8. 교육 및 홍보

가. 기본방향

- 농림부(검역원) 및 시·도(시·군·구)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 영업자·자체검사원 및 종업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자율적인 품질관리 향상 도모
- 소비자에게 축산물위생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축산물 선택능력의 향상과 축산물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부정·불량축산물 추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
-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활발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나. 교육

(1) 축산물위생업무담당자 교육

- 주관 : 농림부(검역원)
- 교육대상 : 축산물위생업무 담당공무원

- 교육방법 : 각 시·도별 순회교육 또는 농업연수원 등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운용에 관한 교육
-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 대한 실무교육
- SSOP, HACCP 시행에 대한 교육 등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내용 등

(2) 영업자·자체검사원·종업원 등 교육

- 교육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시)”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HACCP 교육훈련은 한국식품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수의사회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 교육일정 확인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은 교육시기·일정 등에 대하여 시·도와 협의 후 “연간 축산물위생교육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부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위생교육기관별 교육추진일정 확인·점검

-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조치

다. 홍보

- 소비자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축산물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경우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축산물 취급요령 등 각종 자료제공 및 교육실시
 - 무허가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 부정·불량축산물 식별요령
 - 변경된 법령·제도에 관한 교육
 - 축산물의 보관 및 취급요령
 - 부정·불량축산물 발견 시 신고요령 등

- HACCP 제도 및 HACCP 적용제품의 소비촉진 등 홍보

- 지역실정에 적합한 각종 교육 및 홍보용 책자·팸플릿 등 개발·보급
 - 홍보전단 및 반상회보 등 이용
- 각종 단체를 통한 홍보강화
 -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단체·협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축산물위생에 관한 정보제공 등 교육실시
- 지역사회 주관행사 시 홍보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개최 시 축산물에 대한 홍보물 제공, 부정·불량축산물 추방 캠페인 전개 등 홍보전략 적극 유도
- 전파매체 및 인쇄매체 활용
 - TV·라디오·유선방송·지역방송 등과 협력하여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 신문·잡지·정부간행물·지역신문·사보 등 각종 인쇄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등 다양한 홍보 실시

9. 위생점검 실명제 추진

가. 목적

-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축산물영업장에 출입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출입목적,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를 영업자에게 명확히 알려 줌으로써 형식적인 감시관행 타파 및 점검의 투명성 제고

나. 대상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다. 관련법령 내용

- 영업장 출입 시 관계공무원 증표 제시의무(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3항)
 -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검사관증 등)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검사결과에 기록의무(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출입·검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당해영업자가 비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각 시·도(시·군·구)는 영업자가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비치·보관하도록 동 기록부를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검역원 및 각 시·도(시·군·구)는 사전에 자체 축산물위생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실시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
-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점검목적, 점검자의 소속·직급·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검사내용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할 것

※ 중점 기재사항

- 점검목적 : 정기위생검사, 하절기·성수기 특별단속, 수거검사 구분 기재
- 주요지도·지시내용 : 관련 법조항을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기록

* 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3조(검사관과 자체검사원),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제16조(합격표시),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등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조항, 위반내용 및 확인서 징구여부 기록

10.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준수사항

가. 농림부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관련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1)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하나의 종류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에 2회 이상의 출입·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부처에서 출입·검사의 대상이 되는 업소의 영업자는 소관 기관에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출입·검사의 경우 6월 이내에 유사한 목적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될 때에는 중복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3) 다만,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신고·제보 및 위해정보 입수에 따른 점검, 특별단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 및 (2)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1]

축산물 수거검사 현황

현황

기관명 :

(단위 : 건)

| 구 분 | /4 분기 | | 누 계 | | 비 고 |
|------------|-------|-----|-----|-----|-----|
| | 수 거 | 부적합 | 수 거 | 부적합 | |
| 유 가 공 품 | | | | | |
| 식 육 가 공 품 | | | | | |
| 알 가 공 품 | | | | | |
| 포 장 육 | | | | | |
| 식육·식용란 | | | | | |
| 합 계 | | | | | |

※ 문제축산물은 ()내에 별도 기재

품목별

(계/수입품, ○분기)

| 구 분 | 검사대상품목 | 검사건수 | | 적 합 | | 부 적 합 | | 비고 |
|------------|-----------|------|----|-----|----|-------|----|----|
| | | 분기계 | 누계 | 분기계 | 누계 | 분기계 | 누계 | |
| 합 계 | | | | | | | | |
| 유가공품 | 소 계 | | | | | | | |
| | 아이스크림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분말류 | | | | | | | |
| | 아이스크림믹스류 | | | | | | | |
| | 우 유 류 | | | | | | | |
| | 저지방우유류 | | | | | | | |
| | 유당분해우유 | | | | | | | |
| | 가공유류 | | | | | | | |
| | 산 양 유 | | | | | | | |
| | 발효유류 | | | | | | | |
| | 버터유류 | | | | | | | |
| | 농축유류 | | | | | | | |
| | 유크림류 | | | | | | | |
| | 버 터 류 | | | | | | | |
| | 자연치즈 | | | | | | | |
| | 가공치즈 | | | | | | | |
| | 분 유 류 | | | | | | | |
| | 유 청 류 | | | | | | | |
| | 유 당 | | | | | | | |
|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 | | | | | |
| 조제유류 | | | | | | | | |
| 기 타 | | | | | | | | |

| 구 분 | 검사대상품목 | 검사건수 | | 적 합 | | 부 적 합 | | 비고 |
|--------|---------|------|----|-----|----|-------|----|----|
| | | 분기계 | 누계 | 분기계 | 누계 | 분기계 | 누계 | |
| 식육가공품 | 소 계 | | | | | | | |
| | 햄 류 | | | | | | | |
| | 소시지류 | | | | | | | |
| | 베이컨류 | | | | | | | |
| | 건조저장육류 | | | | | | | |
| | 양념육류 | | | | | | | |
| | 분쇄가공육제품 | | | | | | | |
| | 갈비가공품 | | | | | | | |
| | 식육추출가공품 | | | | | | | |
| | 식용우지 | | | | | | | |
| | 식용돈지 | | | | | | | |
| | 기 타 | | | | | | | |
| 알가공품 | 소 계 | | | | | | | |
| | 난 황 액 | | | | | | | |
| | 난 백 액 | | | | | | | |
| | 전 란 분 | | | | | | | |
| | 전 란 액 | | | | | | | |
| | 난 황 분 | | | | | | | |
| | 난 백 분 | | | | | | | |
| | 알가열성형제품 | | | | | | | |
| | 염 지 란 | | | | | | | |
| | 피 단 | | | | | | | |
| | 기 타 | | | | | | | |
| 포장육 | 소 계 | | | | | | | |
| | 포 장 육 | | | | | | | |
| | 기 타 | | | | | | | |
| 식육·식용란 | 소 계 | | | | | | | |
| | 쇠 고 기 | | | | | | | |
| | 돼지고기 | | | | | | | |
| | 닭 고 기 | | | | | | | |
| | 양 고 기 | | | | | | | |
| | 염소고기 | | | | | | | |
| | 식 용 란 | | | | | | | |
| | 기 타 | | | | | | | |

※ 총 수거건수에 문제축산물실적을 포함시키고 문제축산물은 ()내에 별도 기재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기관명 :

(2006. 분기)

| ① 검사 구분 | 제품명 | 제품 유형 | 제 조 회사명 (업소명) | 소재지 | 부적합 내 용 | 조 치 내 용 | | | | | | | | 비 고 | |
|---------------|-----|----------|----------------------|-----|-------------|------------|----------------------------|-----------------------|--------------------------------------|------------------|------------------|-------------|--------------------------------------|--------|-------------|
| | | | | | | 계 | 영 업 허 가 취 소 | ② 영 업 정 지 | ③ 영 업 의 일 부 정 지 | 시 정 지 시 | ④ 과 징 금 | ⑤ 고 발 | ⑥ 해 당 시 · 도 통 보 | | ⑦ 기 타 |
| 누계 | | | | | | | | | | | | | | | |
| 분기 계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① 검사구분 :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식육·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문제축산물 등으로 구분 기재
- ②·③ 영업정지 및 영업의 일부정지의 경우 : ○○정지 ○일(○부터 ○까지)
- ④ 과징금의 경우 : 영업정지 또는 영업의 일부정지 ○일 같음하는 과징금 ○원
- ⑤ 고발의 경우 : 고발기관 기재
- ⑥ 해당 시·도(시·군·구) 통보의 경우 : 해당 관청을 기재
- ⑦ 기타 경우 : 기타 내용 기재

[별지 3]

부적합제품 등 조치현황

기관명 :

(년 분기)

| 제품유형 | 제품명 | 제 조 회사명 | 소재지 | 부적합내역 | 행정처분 | 타 시·도에서 이관된 사항 | | |
|------|-----|---------|-----|-------|------|----------------|------|--------|
| | | | | | | 이관한 시·도명 | 접수일자 | 행정처분내역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분기 계 | | | | | | | | |

※ 작성요령

- 제품명은 축산물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을 기재

[별지 4]

[별지 5]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정처분실적(/4분기)

기관명 : (1)

| 업종별 | 처리건수 | | | 과대광고 보도기관 | | | | | | | 행정처분내역 | | | | 고발 |
|----------|------|-----|-----|-----------|----|----|-----------|-----|----|----|--------|-----|-----------|----------|-----|
| | 계 | 자체 | 이첩 | 계 | 신문 | 잡지 | 생활 정보지 | 인쇄물 | TV | 기타 | 계 | 영업지 | 품목 제조지 | 시정 지시 | |
| 합 계 | (2) | (3) | (4) | (5)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6) | ① | ② | ③ | (7) |
| 가공업소(소계) | (8) | | | | | | | | | | | | | | |
| (유가공품) | | | | | | | | | | | | | | | |
| (식육가공품) | | | | | | | | | | | | | | | |
| (알가공품) | | | | | | | | | | | | | | | |
| 식육포장처리업소 | (9) | | | | | | | | | | | | | | |
| 축산물판매업소 | (10)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기관명 : 행정처분을 한 기관명 기재
- (2) 과대광고 처리건수 총계 : (3)+(4) 기재
 - 분기 종료일 현재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를 기재
 -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3) 분기종료일 현재 해당기관이 적발하여 직접 조치(행정처분, 고발 등)한 건수를 기재
- (4) 분기종료일 현재 해당기관이 적발하여 직접 조치(행정처분, 고발 등)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에 이첩한 건수를 기재
- (5) 과대광고 보도기관 총계 : ①+②+③+④+⑤+⑥ 기재
 - 과대광고 보도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중복기재 가능
- (6) 행정처분 내역 총계 : ①+②+③ 기재
 - 분기 종료일 현재 자체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조치건수와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아 직접 행정처분한 조치건수를 합산하여 기재
- (7) 고발건수 기재
 - 해당기관이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과 별도로 직접 고발한 건수를 기재
- (8) 축산물가공업소 소계 기재
- (9) 식육포장처리업소 소계 기재
- (10) 축산물판매업소 소계 기재

[별지 6]

고발·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결 재 | | | 접 수 연월일 | 신고자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신 고 내 용 | 접수자 | 조 치 내 용 | 비고 |
|--------|----|----|---------------|----------------------------|------------------|-----|------------------|----|
| 담당자 | 계장 | 과장 | | | | | | |
| | | | | | | | | |

[별지 7]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일지

| | | | | | | |
|------------------------------|-----|--------|------|---------|--------|--------|
| 년 월 일 | | | | 담당자 | 계 장 | 과 장 |
| 정 보 수 집 | | 처 리 | | 처 리 내 용 | | |
| 금 일 | 누 계 | 금 일 | 누 계 | 직접단속 | 이 첩 | 미 결 |
| | | | | | | |
| 금 일 정 보 수 집 내 용(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 | | | | |
| | | | | | | |
| 금 일 단 속 활 동 내 용 | | | | | | |
| 단속인원 | 명 | | 출장지역 | | | |
| | | | | | | |

[별지 8]

문제업소 관리대장

| | | | 담당자 | 계 장 | 과 장 |
|------------------|---------|-------|-----------|-----|-----|
| | | | | | |
| 업 소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 | | | |
| 업 종 | 품 목 수 | 전화번호 | 작 성 연 월 일 | | |
| | | | | | |
| 연 월 일 | 위 반 내 용 | | | | 비 고 |
| | | | | | |
| 특 기 사 항 | | | | | |

[별지 9]

특별지역 관리대장

| | | | | 계 | 계 장 | 과 장 |
|--------|--------|-------|-------|---------|-----|-----|
| 특별관리지역 | 구분(업종) | 대상업소명 | 소 재 지 | 특 기 사 항 | | |
| | | | | | | |

축산물가공품 중점검사 항목

1. 공통 검사항목

| 가공품별 | 중점검사 항목 | 비 고 |
|---|---|---|
| 가.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 | 살모넬라(<i>Salmonella</i> spp), 황색포도상구균(<i>Staphylococcus aureus</i>),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i>Clostridium perfringens</i>),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i>Listeria monocytogenes</i>), 대장균O-157:H7(<i>Escherichia coli</i> O-157:H7) | |
| 나. 병·통조림 축산물 및 레토르트 축산물 | 세균발육시험 | 세균발육시험을 하는 통조림 등 멸균제품은 식중독균, 대장균균 및 세균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2. 축산물별 검사항목

| 분 류 | 유 형 | 중점검사항목 |
|-----------------|-------------------|---|
| I. 포장육 | | |
| 1. 포장육 | 포장육 | 성상,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
| II. 유가공품 | | |
| 1. 우유류 | 우유류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균,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산도, 이물 |
| 2. 저지방우유류 | 저지방우유류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균,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
| 3. 유당분해우유 |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 성상, 유당, 세균수, 대장균균 |
| 4. 가공유류 |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균, 무지유고형분 |
| | 유음료 | 성상, 세균수, 대장균균 |
| 5. 산양유 | 산양유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균, 포스파타제(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함) |

| 분 류 | 유 형 | 중점검사항목 |
|---------------|-----------------------------------|------------------------------------|
| 6. 발효유류 |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 성상,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
| 7. 버터유류 | 버터유, 버터유분말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
| 8. 농축유류 |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
| 9. 유크림류 | 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
| 10. 버터류 | 버터, 가공버터 | 성상, 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보존료, 수분 |
| 11. 자연치즈 | 자연치즈 | 성상, 대장균, 보존료, 유고형분 |
| 12. 가공치즈 | 가공치즈 | 성상, 대장균군, 보존료, 유고형분 |
| 13. 분유류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지방 |
| 14. 유청류 | 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
| 15. 유당 | 유당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당 |
| 16.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
| 17.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 성상, 조단백, 유성분, 세균수, 대장균군, 이물, 구리 |
| |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 성상, 조단백, 유성분, 세균수, 대장균군, 이물 |
| |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이물 |

| 분 류 | 유 형 | 중점검사항목 | |
|-----------------|--|--|---|
| 18.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이물 | |
| |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성상, 유지방(아이스밀크에 한함), 세균수, 대장균군, 이물 | |
| 19. 아이스크림분말류 | 아이스크림분말류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 |
| 20. 아이스크림믹스류 |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 성상,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 |
| |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 성상, 유지방(아이스밀크믹스에 한함), 세균수, 대장균군 | |
| Ⅲ. 식육가공품 | | | |
| 식 육 가 공 품 | 소시지류 | 성상, 아질산이온,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 |
| | 분쇄가공육제품 | 성상,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O-157:H7,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 |
| | 식육추출가공품 | 성상, 타르색소,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 | |
| | 그 외 식육가공품 | 비가열제품 | 성상,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
| | | 가열제품 | 성상,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
| | 식용우지, 식용돈지 | 성상,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 |
| 원료우지, 원료돈지 | 성상, 산가, 산화방지제 | | |
| Ⅳ. 알가공품 | | | |
| 알 가 공 품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기열성형제품, 염지란 | 성상,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균(살균제품에 한함) | |
| | 피단 | 성상,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납 | |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7.4, 1996.8.20, 1999.5.29, 2001.6.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7.4, 1993.7.27, 1998.1.10, 2001.6.21>

1. “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내지 5. 삭제
6. 삭제
7. 및 8. 삭제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6.21>

제4조(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8.20, 1999.5.29> [전문개정 1988.7.4]

제5조(수시건강진단)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0, 2001.6.21>

②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4조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전염병의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6.21>

제6조 삭제 <2001.10.9>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9.5.29]

제8조 삭제 <1999.5.29>

제9조(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1> [전문개정 1999.5.29]

제10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500원을 당해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천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4, 1998.1.10>

부칙(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54호, 2003.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상란중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제3조관련)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 | |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병검사 |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 1회/6월 | 1회/6월 | 1회/6월 |
|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 1회/3월 | 1회/6월 | 1회/1월 |
| 3.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 4. 특수업태부 | 1회/3월 | 1회/6월 | 1회/1주 |

[별표 2]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제4조관련)

| 대 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 1회/년 |
| | 2. 폐결핵 | |
| | 3. 전염성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피부질환을 말한다) | |

먹는물의 수질기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은 1ml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플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대장균군은 100m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검사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ℓ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ℓ(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세레늄은 0.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6가크롬은 0.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질소는 1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보론은 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 0.04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크실렌은 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각각 0.1mg/ℓ, 0.08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디브로모아세트니트릴은 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디클로로아세트니트릴은 0.09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트리클로로아세트니트릴은 0.004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는 300mg/ℓ (먹는샘물의 경우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아. 아연은 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미네랄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탁도는 I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의 경우에는 제6호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황산이온은 2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알루미늄은 0.2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6.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은 바이러스, 지아디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정수장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수처리를 할 것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2조)

1.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1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11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관련 별표 14)

1. 적용대상 축산물 : 삭제 <2004.8.4>
2. 표시(가공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 (1)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 표현가능 :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
 - 표현불가 :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
-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
 -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
 - 유아식·환자식 등
-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감시의 착안사항

가.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여부(품목제조보고서의 제품명 허위표시 확인)

예 : 제품명, 업소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임의로 변경

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

예 :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암 등의 예방 및 치료, 대장·위장·간장·신장장애 등의 치료 개선

② 신체조직 기능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

예 : 자양강장(특소세법에서 허용된 것 제외), 노화치료, 회춘, 정력증진, 혈액순환, 자연치유능력 등

③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의 암시

- 명칭 또는 캐치프레이즈로 암시

예 : 불로장수, 한방비법, 신비의 약, 생명의 민간약 등

- 함유성분의 표시 및 설명으로 암시

예 : 간장해독, 소화치료제로 알려진 ○○원료를 사용하고 유용성분을 첨가하여 상승효과를 나타냄 등

- 제법의 설명으로 암시

예 : 지리산 심산계곡에서 자생하는 ○○을 주원료로 xx, yy 등의 약초를 독특한 제조법으로 제제 등

- 기원, 유래 등의 설명으로 암시

예 : 옛날부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상어로부터 추출한 간유를 허약체질, 상처치유목적, 위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복용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사용 등

- 신문·잡지 등의 기사나 의사·학자 등의 담화, 학설, 경험담 등을 인용 또는 기재함으로써 암시

예 : 의학박사 ○○○의 말씀 「○○제품을 복용하면 백혈병·암 등에 걸리지 않으며,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등

- 「건강체크」 등으로 신체 상태나 증상 등을 체크해 각각의 증상에 따라 섭취를 권장 또는 암시

예 :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건강수준 등

- 「○○○의 분에게」 등의 표현으로 암시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예 : 병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등

- 「호전반응」이란 표현으로 암시

·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음에도 제품섭취 시 발생하는 소화장애, 소화이상 등을 체질개선, 체내정화라는 명현반응 또는 호전반응으로 설명하여 섭취를 권장

- 「효능」, 「효과」등의 표현으로 암시

질병명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특정제품의 섭취에 따라 「효능」, 「효과」 또는 「효능·효과」등의 표현

예 : ○○제품은 1개월 이상 계속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그 효과가 인정된...

다.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여부

- 제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소량 함유된 것을 함유되었거나 많이 함유한 것으로 표시광고

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허위표시·광고

- 제조업체나 중간 또는 최종판매자 등에 의한 변조여부

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여부

- 연구문헌을 인용하여 문헌내용과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 것은 제조방법에 국한되며, 축산물의 성분·효능 등의 경우에는 인용이 불가함

- 바.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사.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여부
 -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은 제외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한 당해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 외국산임에도 국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아.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는 한국인의 장에서 추출하여 배양시킨 유산균을 사용하여 외국 유산균주를 사용한 제품과는 달리 발효식품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 우리는 고름우유를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 자.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여부(“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포함)
 - 부적정한 표현문구
 - 최고, 최상, 최첨단, 최대, 최초, 유일, 제일, 절대적, 이상적, 가장 좋은
 - 고기능, 고품질, 고단위,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 뛰어난, 탁월한, 독특한, 특별히, 각광, 강력한, 특수한, 완전한
 - 순수, 천연, 자연, 무공해, 신비, 미지의
 - 질병, 질환, 성인병
 - 알칼리성체질개선, 산성체질개선, 치료, 강장·강장효과
 - 불로장수, 장수식품, 불로초
 - FDA허가, FDA허가제품, FDA실험실 승인, 일본후생성 승인
 - 호정반응, 명현반응, 자연치유반응

- 모호한 단어의 수정표시
 - 효능, 효과, 약효 → 유용성
 - 복용 → 섭취
 - 용량 → 섭취량
 - 용법 → 섭취방법
 - 생약, 한방원료 → 동·식물성원료
 - 한방 → 민간

차.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여부

- 나체, 만나체 등 음란표현 등

카. 판매사레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여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제외

표시기준에 대한 감시의 착안사항

가. 표시기준 적용대상

-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포장육
-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 중 축산물가공품
- ③ ①·②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나. 표시사항

- ①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하는 제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양성분(대상 축산물에 한함), 표시대상첨가물, 그릇·포장 재질(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준함), 기타축산물별 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 ② 기타 축산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

다. 표시금지사항

- ①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사항
-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허위표시)

라. 표시사항별 착안사항

- ① 제품명
 - 품목제조보고(수입신고)한 명칭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여부
 -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여부
 - 특정성분 등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적정여부(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표시 등)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구분에 적정하게 표시여부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여부

③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소명과 소재지(반품교환) 표시여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경우 가공업소(외국어표시 가능)와 함께 당해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병행표시여부

④ 제조연월일

- “○○년○○월○○일”, “○○.○○.○○.” 등 표시 적정여부
- 일괄표시가 곤란한 제품(자동포장표시 등)의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 명시여부
- 통조림제품은 연의 표시 끝 숫자만을, 10월, 11월, 12월은 O, N, D로 표시 가능

⑤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등 표시 적정여부
- 일괄표시가 곤란한 제품의 당해위치에 표시위치 명시여부
-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 적정여부
- 제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월○○일까지”, “○○.○○까지”, “○○월○○일○○시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 가능
-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였는지 여부(“냉동보관”, “냉장보관” 및 보존온도 표시)
-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장 짧은 유통기한 표시여부

⑥ 내용량

- 표시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의 적정여부
 - 가공 또는 판매업소 등에 저울 등 계량기가 있을 경우 측정하여 허용 오차의 범위보다 부족한 경우 수거하여 정밀검사
-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인 경우 중량으로 표시
 - ※ 아이스크림류는 부피로 표시가능
- 내용물이 액체인 경우 용량으로 표시
-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
- 개수로 표시할 때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안에 표시
- 통상적으로 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축산물의 중량을 표시

⑦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함량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원재료 또는 성분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
- 함유된 양과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란에 그 명칭을 표시
- 제품명의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및 원재료명 표시란을 제외하고 주표시면에서 특정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함께 표시
-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축산물가공품에 있어서는 그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명칭·용도는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서 사용한 가용성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할 때에는 제품 중에 함유된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 함께 표시

⑧ 영양성분

- 표시대상
 - 조제유류
 -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 하는 축산물

-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
- ※ “영양성분표시” :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
 “영양강조표시” :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거나 같은 유형의 다른 제품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
 - 주표시면이 30cm²이하인 제품
-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 영양성분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00g당, 100ml당 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용기·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 1인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가능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은 그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표시
 - 비타민, 무기질은 조제유류의 경우 영양소함량기준치의 항목 모두를 임의 표시가능, 그 외의 제품은 비타민 A, D, E, C, B₁, B₂, 나이아신, B₆, 엽산, 칼슘, 인, 철, 아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하는 경우 명칭, 함량,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
 -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을 표시하는 경우 명칭 및 함량,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표시
 - 당류, 지방산류, 아미노산류를 표시하는 경우 명칭 및 함량을 표시
 - 「저, 무, 고, 함유」 등의 용어표시는 함량강조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가능 : 축산물의 표시기준 참조
 - 「덜, 더, 감소, 라이트, 강화, 첨가」 등의 용어를 표시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참조
 - 기타 영양성분의 세부표시방법의 적정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참조

⑨ 기타 표시사항

- 조사처리제품 :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연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및 조사도안의 적정표시 여부
- 냉동제품은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내표시 여부
- 우유 등 개봉 후 변질되기 쉬운 제품은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시 여부
- 통조림제품 종류 및 보존·주의사항 등 표시 적정여부
(원터치 캔 통조림은 “개봉 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냉동상태로 판매되는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 표시 적정여부
- 해당제품별 “살균제품”, “멸균제품” 표시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소시지류는 비가식 케이싱을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가식 케이싱의 사용여부를 표시
- 발효 후 가열처리된 발효유류의 경우 “발효 후 가열처리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붙임 8]

확 인 서

| | | | |
|-----|--|--------------------|--|
| 업 종 | | 허가(신고)번호 | |
| 업소명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상기 본인은 위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06년 월 일 시경
부정·불량축산물 단속반에 의해 다음 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다 음

2006. . .

확인자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조사자 : 직
직

성명 (인)

성명 (인)

< 확인서 작성방법 >

- 확인서 내용 중 일부를 삽입, 삭제 등 정정하였을 경우 정정 글자수를 기재하고 정정부분은 두 줄로 단정하게 그어서 그 부분을 해득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인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6차 원칙에 의거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용어를 사용할 것
- 작성된 확인서상으로 증거서류 또는 증거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히 첨부하고 가능한 한 접인할 것
- 확인서상 첨부가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처분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보존할 것(시설·장비 등의 멸실 또는 무단이전 등)
- 압류제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압류제품을 관공서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봉합지 등을 사용하여 압류증 발급자의 허가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관증을 받을 것

확인서 작성예시(무허가 포장육 생산 판매)

상기 본인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시(도) 00동 000번지 소재 건물2층 30평에 발골작업대 1대,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종업원 3명(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으로 하여금 식육(쇠고기 등)을 원료로 하여 단순절단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00kg(00만원 상당)의 포장육을 제조하여 동 기간 동안 합계 000kg(소매가격 00만원 상당)을 시내 000백화점 등 20여개 업소에 납품(판매)하여 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1) 영업장 시설 사진
 2) 포장육 압류증
 3) 발골작업대, 냉장고, 냉동고 압류증
 4) 식육(쇠고기 등) 압류증
 5) 납품처의 업소명, 전화, 소재지 및 제품납품(판매)대장 등